2022년 3월 29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월 29일(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문의 : 일자리정책과 이동원 과장(044-204-7440), 전상용 사무관(7443), 안태유 주무관(7448)
중소기업중앙회 박화선 부장(02-2124-3145), 윤지민 과장(3146), 최고은 사원(3147)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동윤 팀장(02-3275-2106), 이윤주 주임(3093)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할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 2022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3.29~5.13) -

□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 모집

□ 선정 기업에 현판과 확인서 발급, 상징(마크) 사용권 부여, 자금·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29일부터 5월 1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30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 연도별 선정현황(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올해에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을 거쳐 8월경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3,000억원 미만)이 폐지돼 매출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13일(금)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R&D)·지역특화산업 등 50여개 사업,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5%p 감면, 혁신성장지원자금 100억원까지 한도 상향 등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성장요인·장수비결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중소기업에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 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로 접속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전상용 사무관(☎044-204-7443), 안태유 주무관(7448)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개요

□ 개요

○ **(도입배경)**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 **(개념)**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확인요건)** 필수지표*를 만족하고,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기업 중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① 최근 5년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업종 평균 이상일 것 ② 법인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③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원 유죄 판결 이력이 없을 것

○ **(추진경과)** 법적근거 마련('16.9,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4~6) → 1차 선정('17.2) → 중견기업으로 확대('17.6) → 2~6차 선정(총 30개사*)

* 연도별 선정현황 : ('17) 6개사, ('18) 4개사, ('19) 4개사, ('20) 5개사, ('21) 11개사

□ 확인절차

① 신청·접수	② 평가·검증	③ 심의·확정	④ 사후 관리
기업 →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중기부	관리기관, 중기부

* (관리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기업성장부)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원지원팀)

□ 우대내용

○ **(자긍심 고취 등)**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현판 제공, 언론·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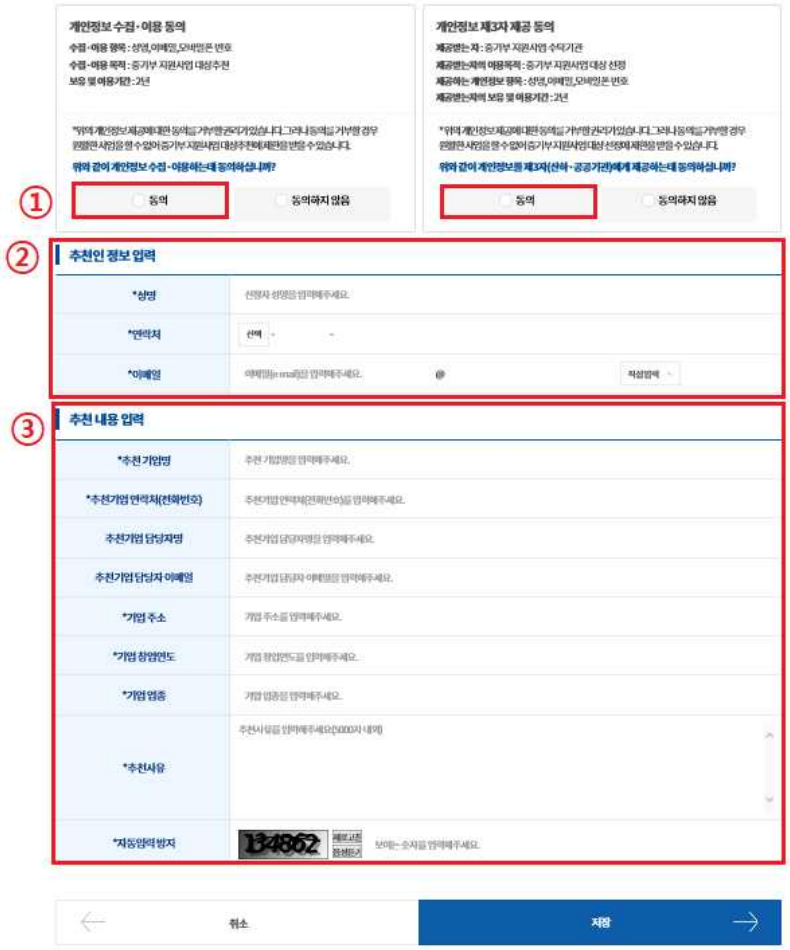
○ **(지원사업 참여우대)** 정책자금, R&D, 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명문장수기업 Time-honored Business

참고2 국민추천제 운영절차

□ **(추천방법)**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주요정책 → 국민추천 메뉴 접속 → 명문장수기업 추천하기 → 추천내용 입력 → 추천완료 및 메시지(추천번호, 문자메시지) 확인

< 국민추천제 추천방법 예시 >



< 추천내용 입력사항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동의서 확인 후 '동의' 체크

② **추천인 정보 입력**

▸ 성명, 연락처, 이메일 기입

③ **피추천인(기업) 정보 입력**

▸ 기업명, 연락처, 주소지, 창업연도, 업종, 추천사유 등 기입

⇒ **저장 및 최종 제출 완료 (추천번호 및 문자메시지 확인)**

□ **(활용방안)** 추천대상 기업의 자격요건(업력 등) 검토 및 참여의사 확인 후 공모접수 안내를 통한 직접 사업신청 유도

< 국민추천제 추진절차 >

국민추천 페이지 운영	➤	후보기업 추천(~5.6)	➤	자격요건 검토
중기부 누리집		국민		중기중앙회·중견련

➤	참여의사 확인 및 신청안내	➤	사업 신청(~5.13)	➤	평가진행
	중기중앙회·중견련		추천대상 기업		중기중앙회·중견련

참고3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

구분	지 표(점수)		세부기준(안)	비고
장수 (60)	업력(60)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주된 업종 변경 없이 45년 이상 - 45년 50점, 1년당 1점 추가, 55년 이상 60점	
명문 (40)	경제적 기여 (12)	장기고용유지(3)	최근 5년 평균고용률 ≥ 100%	필수지표 외 지표 2개 이상 충족
		매출액증가율(3)	최근 5년 매출액증가율 ≥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3)	최근 5년 영업이익률 평균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3)	최근 5년 부채비율 평균 ≤ 150%	
		법인세납부 실적(필수)	최근 5년 체납 사실 없을 것	
	사회적 기여 (16)	법규준수(필수)	최근 3년간 관련 법규위반으로 법원 유죄 판결 0건, 정부포상 추천제한 규정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각 지표별 기본 점수외 가·감점 포함 점수
		임직원 인권존중(1.5)	인권 행동지침,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고용 및 근로조건(2)	노사관계 제도화, 인재개발 노력 등	
		오염방지(2)	대기·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사용 감축 등	
		지속가능한 자원이용(2)	원부자재, 에너지, 온실가스 사용 감축 등	
		안전 및 보건(1.5)	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 시행, 산업재해율 등	
		반부패 및 공정경쟁(1.5)	반부패 및 공정경쟁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제품 및 서비스 책임(1.5)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	
		사회공헌(2)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봉사활동 시간 등	
		사회적책임경영 전략(2)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전략체계, 추진의지 표명, 성과 관리 여부 등	
	기업 역량 (9)	브랜드/특허/제품(9)	브랜드 인지도 국내·외 상표 및 디자인 등록 건수 특허의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국내·외 특허 등록 건수 주력 제품(서비스) 국내·외 시장점유율 신기술·신제품 등 인증 기술·품질 관련 수상 실적	
	기업 혁신 (3)	연구개발비 비중(3)	최근 5년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 ≥ 업종별 평균	필수지표
가점 (6)	수출 기여(3)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 업종별 평균	
	일자리 창출 기여(3)		일자리창출 정책 참여 유무	
종합 (106)	**필수 요건 및 항목별 최저 점수 기준을 통과하고, 80점 이상 획득(가점포함)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명문 장수기업 확인**			